

##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

###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

### 부속서 5

(Umbrella & Parasol for children)

**1. 적용범위**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우산,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에 대하여 적용한다.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전형적인 우산, 양산으로는 캐릭터 모양의 우산, 양산 또는 캐릭터 등이 우산, 양산에 반영된 제품을 들 수 있다. 다만,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및 놀이를 위해 제작된 완구 우산 등은 제외한다.

**2. 관련표준**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#### KS G 3711 우산·양산

####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. 완구

**3. 용어의 정의**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.

**3.1 살 대** 살, 대 및 부속품들이 조립된 상태를 말한다.

**3.2 살** 윗살, 윗살 보조살, 끝살, 받침살, 받침살 보조살을 말한다. 윗살은 우산의 천정을 지지하는 살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중앙의 살로서, 주로 열처리된 살(Topless형 및 미니형 살대에서는 홈 받침살 및 보조살 아래의 주살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**3.3 대** 손잡이가 달려 있는 중앙의 봉을 말하며 일반식대(일체형)와 1단, 2단, 3단 등으로 접을 수 있는 접이식대가 있다.

**3.4 고정쇠** 접이식 우산을 펼쳤을 때 고정을 하기 위한 고정 장치를 말한다.



그림1 우산의 구조

4. 종류 우산·양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.

< 표 1 > 종 류

구 분	종 류
일반식	수동우산(장우산 포함), 수동양산
	자동우산(장우산 포함), 자동양산
접이식	수동우산, 수동양산
	자동우산, 자동양산

5. 안전요건

5.1 결모양

- a) 살대의 형태는 바르고 윗살과 원단과의 부착, 윗살과 받침살의 부착이 양호하며 빠짐이 없어야 한다.
- b) 도금 또는 도장면은 선명하고 광택이 있어야 하며, 색채가 균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. 다만 광택을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.
- c) 부착품 부착이 견고해야 하며 기능 및 내식성이 양호하여야 한다.
- d) 산류를 뿜을 때 원단이 느슨하거나 주름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.
- e) 고정끈이 있어야 하고 확실하게 원단을 말 수 있어야 한다.

5.2 캡 및 끝 살의 말단부의 치수

캡은 모양은 그림2와 같이 구, 반구, 원통형 또는 원뿔대 이어야 하며, 치수는 외형 지름(D) 13mm 이상, 길이가 40mm 이하이며, 끝 살의 말단부 형상은 구, 반구 모형으로 치수는 외형이 9mm 이상이어야 한다. 단. 접이식 우산에 적용은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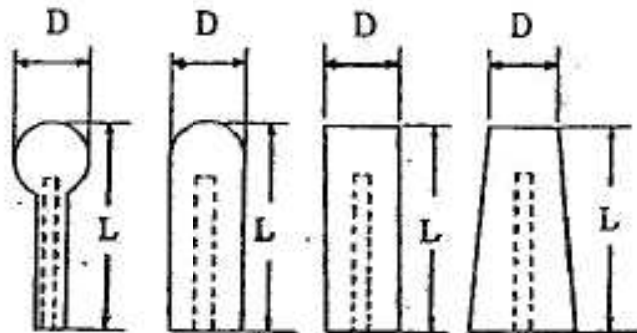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캡의 치수

5.3 부품 조립강도

5.3.1 끝 살의 말단부의 강도 6.1에 따라 시험했을 때 끝살의 말단부는 끝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. 말단부가 끝살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. 또한, 끝 살은 최소 지름이 2mm 이상이어야 하고, 그 끝이 매끄럽고 둥글어야 하며 거스러미가 없는 구형이어야 한다.

**5.3.2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** 우산 손잡이와 캡의 조립 강도는 6.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, 견고하게 조립되어 풀리지 않아야 한다.

**5.3.3 굽힘 강도** 굽힘 강도는 6.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.

## 6. 시험방법

**6.1 끝 살의 말단부 강도** 완구 안전기준의 보호 부품의 인장 시험,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과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다. 단, 인장력은 20 N을 적용한다.

**6.2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** 토오크 게이지로 손잡이에 대하여는 1.0 N·m를, 캡에 대하여는 0.3 N·m 토크를 2초간 가하여 시험 한다.

**6.3 굽힘 강도** 그림 3과 같이 고정쇠를 위로 향하게 하여 손잡이를 고정시키고, 일반식은 14 N, 자동식은 7 N 하중을 30초 동안 캡 끝 부분에 가하여 시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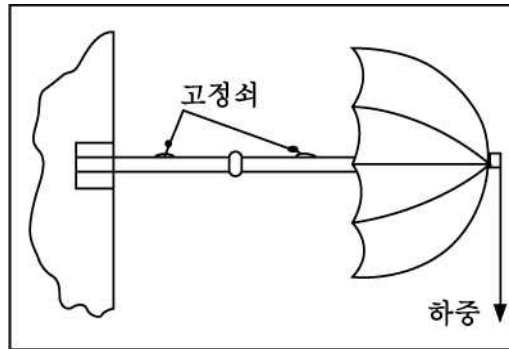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굽힘 강도 시험

## 7.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

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스티커 또는 꼬리표 등에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### 7.1 표시

7.1.1 모델명

7.1.2 제조연월

7.1.3 제조자명

7.1.4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
7.1.5 주소 및 전화번호(지역번호 포함)

7.1.6 제조국명